

##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 **당신의 지역에 있는 HSI 를 아는 방법 .** HSI 피해자 지원 전문인이 귀하의 지역을 위한 것인지 알아보시려면 HSI 제보전화에 전화하십시오.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를 인식하기도 전에 그들과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2. **인신매매 제보에 대해 보고하십시오.**

수상한 인신매매 활동을 보고하거나 연방 법률집행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려면 **1-866-347-2423** 으로 전화하시거나 [www.ice.gov/tips](http://www.ice.gov/tips) 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보를 제출하십시오.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주 7 일 하루 24 시간 HSI 제보전화로 수상한 범죄행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고급 연수를 받은 전문인들이 인신매매에 관련된 자들을 포함한 HSI 에 집행되는 400 가지 이상의 법률에서 공공 및 법률집행기관 모두로부터 보고서를 받습니다.

**국가 인신매매 자원센터 (NHTRC) 1-888-373-7888 에 전화하십시오:**

- 당신의 지역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도움을 받고 연결되십시오;
- 인신매매행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훈련, 기술지원 및 재원을 요구함으로써 좀 더 배워보십시오.

NHTRC 는 국가적으로 일년 하루도 빠짐 없이 일주일에 7 일 24 시간동안 국가 어느 곳에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비상용 직통전화기 유효합니다. NHTRC 는 법률집행 혹은 이민국당국이 아니며 비정부기구에 의해 운영됩니다.

3. **생존자로 부터 배우십시오.** USCIS 가 인신매매 생존자들이 경험한 것과 이민구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다룬 USCIS 가 만든 비디오를 보십시오.

4. T 혹은 U 비자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T 및 U 비자 절차의 단계를 설명하는 비디오를 보시거나 도움이 되는 법률집행 인증지침을 다운로드 하거나 좀 더 많은 질문과 함께 USCIS 로 연락하십시오:

- [www.uscis.gov/humantrafficking](http://www.uscis.gov/humantrafficking) 을 방문하십시오;
- 802-527-4888 에 연락하시거나
- [hotlinefollowup19181914.vsc@dhs.gov](mailto:hotlinefollowup19181914.vsc@dhs.gov) 로 연락하십시오.

5. **귀하의 지역의 대책 위원회를 알아보세요.** 인신매매대책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존재합니다. 이런 대책 위원회는 피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NOGs 는 물론 연방, 주, 지역, 카운티 및 부족 법률집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ww.bja.gov](http://www.bja.gov) 를 방문하여 당신의 지역에 인신매매 대책위원회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6. **블루 캠페인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인신매매를 종식시키는 싸움에 개입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 다 많은 연수, 봉사자료, 피해자 지원자료를 위해서 [www.dhs.gov/bluecampaign](http://www.dhs.gov/bluecampaign) 을 방문하십시오.

페이스 북에 올라와 있는 저희가 ‘좋으시면’ [www.facebook.com/bluecampaign](http://www.facebook.com/bluecampaign). 방문하시거나 [BlueCampaign@hq.dhs.gov](mailto:BlueCampaign@hq.dhs.gov) 로 연락하십시오

연결 되십시오.

사건 수사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하고  
안정화 시키는 것

## 연결되십시오. 사건을 종결하십시오.

사건 수사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하고 안정화 시키는 것

피해자들을 그들이 필요로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들, 간호사들, 사회복지사들, 종교 지도자들과 비정부기구들(NGOs)은 공동체의 믿음이 있는 구성원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유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서비스에 관하여 배움으로써 피해자를 장기간 회복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중심의 접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은 피해자의 식별 및 안정화 및 매매자들을 고발하는 것에 대한 동등가치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조사와 고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합니다. 각 사건과 모든 유죄판결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법률집행과 나서서 함께 일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는지 이해합니다. 그들은 안정, 안전 그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전념합니다.

공동체기구 혹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당신은 피해자중심의 접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신은 법률집행인이 외상이 피해자가 대화소통을하는 방법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민감성을 좀 더 이해하고 피해자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도전을 하는 법률집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제공하는 당신의 지원 및 피해자를 위한 복구서비스는 사건조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국토보안 부(DHS)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조사는 피해자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 그들은 성공적인 매매자의 조사와 고발에 대한 실마리이며;
- 안정성, 안전 및 회복에대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지원이 성공적인 고발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 그들의 착취당하는 동안 불법입국에 연루되어 있거나 불법행위를 범하는 것을 강요당했다면 그들은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 절차를 통하여 통지하고 그들의 건에 개입되는 기회를 갖는 권리를 가집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일하는 것은 착취의 결과로 인해 고생한 피해자의 외상의 수준 때문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에서 피해자에게 지원서비스로 즉시 연결하는 것은 피해자가 복구를 하는데 필요로하는 것과 매매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중심 자원

블루캠페인은 저희 피해자 지원자원을 통하여 피해자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나 당신의 공동체에 있는 서비스를 위하여 피해자를 연결하는 것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보안조사(HIS)제보전화 혹은 국가 인신매매 자원센터(NHTRC)긴급직통전화로 연락하십시오. DHS 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안정화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도움전문인은 공동체기초집단이 의료, 정신건강, 법률지원, 사건관리 및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피해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HSI 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지원전문인은 피해자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형사조사를 통한 피해자 지원 고려사항과 병합하도록 대행인과 일합니다. DHS 는 응급피해지원 필요성을 위하여 유효한 응급지원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과학수사 면접전문인은 발전적으로 적절하고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 및 문화적으로 민감한 범죄과학수사 면접을 수행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심한 외상을 입었다면 이런 범죄 과학수사 면접전문인은 당신의 수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는 사법부(DOJ) 및 보건사회복지부(HHS)가 지역,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인신매매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좀더 알아 보기 위하여 [www.usdoj.gov](http://www.usdoj.gov) 및 [www.hhs.gov](http://www.hhs.gov) 에 방문하십시오.

### 이민구제: 외국국적의 범죄피해자의 안정화

많은 외국피해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구제는 미국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고 그들의 신분이 안정화도록 느끼게 하여주는 피해자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법적신분 없이 피해자를 안정화시키도록 도와주기 위해 DHS 가 제공하는 이민구제의 3 가지 종류에 관해서 아셔야합니다. 당신, 법률집행 및 피해자가 이런 혜택들을 확보하기위하여 뚜렷한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되는 존재(CP)는 당신의 지역 이민국(ICE)사무실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는 단기간의 이민구제의 양식입니다. CP는 법률집행이 식별하는 즉시 유효되어야 하며 수사는 CP를 요구하기 전에 완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CP는 법률집행에 의해 요구됩니다. CP를 요구하기 위하여 지역 미국 이민국 및 세관 집행(ICE)사무소 (HSI 제보전화번호에 전화하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려면 법률집행에 문의하십시오.

T 혹은 U 비이민 비자(T 혹은 U 비자)는 미국에 머물도록 피해자에게 허용하는 이민구제의 좀 더 긴 조건양식입니다. T 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U 비자는 가정내폭력, 성폭행, 인신매매, 비합의적 노예상태 및 다른 심각한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비자 모두 조사 혹은 고발(T 비자건에서 피해자가 18 세 이하거나 외상으로 고생하지 않는한)에 있어서 법률집행을 도와주고 협조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미국 시민 및 이민서비스(USCIS)를 통한 공동체옹호자 혹은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종종 T 비자 혹은 U 비자를 피해자는 신청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www.uscis.gov/humantrafficking](http://www.uscis.gov/humantrafficking) 에 방문하십시오.

연방 공공혜택은 HHS 를 통하여 T 비자가 승인된 후에 유효합니다. 소아 피해자(18 세 이하)들은 피해자로 식별되기만 하면 즉시 HHS 를 통하여 연방 공공혜택에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법률집행 선언서 혹은 인증서 – 당신의 도움과 함께 피해자가 종종 T 혹은 U 비자 신청서류의 주요부분을 완결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집행은 피해자가 법률집행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해 USCIS 에 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건에 개입된 법률집행에게 선언서 혹은 인증서를 채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T 비자를 위해 이것은 요구된 증거자료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지원을 보여주기 위한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것을 T 비자의 신청서류에 포함시키십시오. U 비자를 위해 법률집행인증이 요구된 증거자료입니다. 법률집행을 위하여 이 서류를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집행 선언서 혹은 인증서만으로 이민국 혜택을 승인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며 결정을 내리기 전 USCIS 가 재검토하는 증거자료의 한 부분 일뿐입니다. 피해자가 그들의 경험에 대해 개인적 진술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USCIS 에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다른 종류를 수집하는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USCIS 1-800-375-5283 에 연락하거나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humantrafficking](http://www.uscis.gov/humantrafficking) 로 방문하십시오.